

제7회 강원특별자치도 일자리대상 시행 변경공고

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정, 복지향상에 기여한 도내 일자리 우수기업을 발굴 및 시상하고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「제7회 강원특별자치도 일자리대상」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공고하오니 도내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.

2025년 2월 11일

강원특별자치도지사 ·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장

<주요 변경사항>

○ 변경 내용 : 신청 및 접수 기간 연장

- (당초) 신청 및 접수 : 2025. 1. 13.(월) ~ 2. 14.(금) 18:00

- (변경) 신청 및 접수 : 2025. 1. 13.(월) ~ 2. 21.(금) 18:00

※ 연장 이후 추진절차(현장조사, 심사위원 심사 등)는 당초계획으로 추진

○ 변경 사유 :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간 연장

1. 신청대상

- 도내 소재(본사, 주사업장 또는 주공장) 중소기업으로서 공고일 현재 2년(타 시도에서 이전한 기업은 1년) 이상 정상 가동 중인 기업

※ 소상공인(광업·제조업·건설업·운수업 상시근로자 10명 미만, 그 외 업종 5명 미만) 자격제한

- 또한, 최근 1년간('24.1.1.~'24.12.31.) 고용증가 인원이 3명 이상인 면서 '23년 12월 말 대비 '24년 12월 말 기준 일자리 증가율*이 3%(인구감소·접경지역)** 또는 5% 이상인 기업

* 일자리 증가율(%) = (('24.12월 말 근로자 수 - '23.12월 말 근로자 수) / '23.12월 말 근로자 수) × 100

** 인구감소접경지역: 고성, 삼척, 양구, 양양, 영월, 정선, 철원, 태백, 평창, 홍천, 화천, 횡성, 인제

《참고》 선정(신청)제외 대상 ※ 「강원특별자치도 일자리대상 조례」 제4조

- ▶ 일자리대상을 수상한 경력이 있는 경우
 - '최우수' 또는 '대상' 수상 기업 : 참가제한 - '우수' 수상 기업 : '대상'만 도전가능
- ▶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 * 신용평가등급 ccc+ 이하
- ▶ 임금체불, 민원야기, 환경오염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
- ▶ 최근 2년간 2회 이상 근로기준법 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지원 법률 위반으로 징역 또는 벌금·과태료 처분을 받은 기업
- ▶ 공고일 현재 국세·지방세 체납 기업/ 게임, 도박, 유흥 등 사행성 불건전 관련 업체

- 자격 업종: 전체 산업분야 업종

※ 다만, 국민정서와 사업목적에 반하는 일부 업종은 대상 제외

【 제외업종 】 ※ 제외 대상 업종표 참고

-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(도박·사치·향락, 건강유해, 부동산 투기 등)
- 정부 등 공공부문에서 직·간접적으로 운영·지원하는 업종(철도 등 운송,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 등)
- 고소득 및 자금조달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업종(법무·세무·보건 등 전문서비스, 금융 및 보험업 등)

○ 제외 대상 업종 ※ 「강원특별자치도 일자리대상 조례 시행규칙」 별표 1

업종 분류	산업분류코드 (KSIC-10)	제외 업종
건설업	41 ~ 42	건설업(단, 산업 생산시설 종합 건설업(41225), 환경설비 건설업(41224), 조경 건설업(41226), 배관 및 냉·난방 공사업(42201), 건물용 기계·장비 설치 공사업(42202), 방음, 방진 및 내화 공사업(42204), 소방 시설 공사업(42205), 전기 및 통신공사업(423)은 지원가능 업종)
도매 및 소매업	46102 中	담배 중개업
	46~47 中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중개 및 도소매업 사행성, 사치성 상품 중개업 및 도소매업, 주류, 담배 소매업
	46331, 3	주류, 담배 도매업(단, 주류 중개업 면허보유 기업은 지원 가능)
	47859 中	성인용품 판매점
	47993 中	다단계 방문판매
정보통신업	58 中	경마, 경륜, 경정 등 사행성 잡지 발행업,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
	59142	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
정보서비스업	63992	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
금융 및 보험업	64 ~ 66	금융 및 보험업
부동산업	68	부동산업
전문서비스업	711~2	법무,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
	7151	회사본부
수의업	731	수의업
사업 지원 서비스업	751	고용 알선 및 인력 공급업
	75330	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
	75999 中	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또는 판매업
임대업	76390 中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
공공행정,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	84	공공행정,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
교육서비스업	851~854	초·중·고등 교육기관 및 특수학교
	855~856 中	일반교과 및 입시 교육
보건업	86	보건업 (단, 사회적경제기업은 지원 가능)
예술,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	91113	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
	9124	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
	91291	무도장 운영업
협회 및 단체	94	협회 및 단체 (단, 「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자」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가능)
기타 개인 서비스업	96992	점술 및 유사서비스업
가구 내 고용 및 자가소비 생산활동	97 ~ 98	가구 내 고용활동 및 별도로 분류되지 않는 자가소비 생산활동
국제 및 외국기관	99	국제 및 외국기관

※ 사행산업 업종, 일사계절단기인력 사용 업종, 투기조장 및 기타 국민정서상 부적절한 업종 영위 기업은 자격제외 대상

2. 신청 및 접수

○ 신청기간 : 2025. 1. 13.(월) ~ 2. 21.(금) 18:00까지

※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만 가능, 마감일 18:00까지 도착분에 한함

○ 접수처 : 기업 소재지 시군 일자리 담당 부서

《시군 일자리 담당 부서》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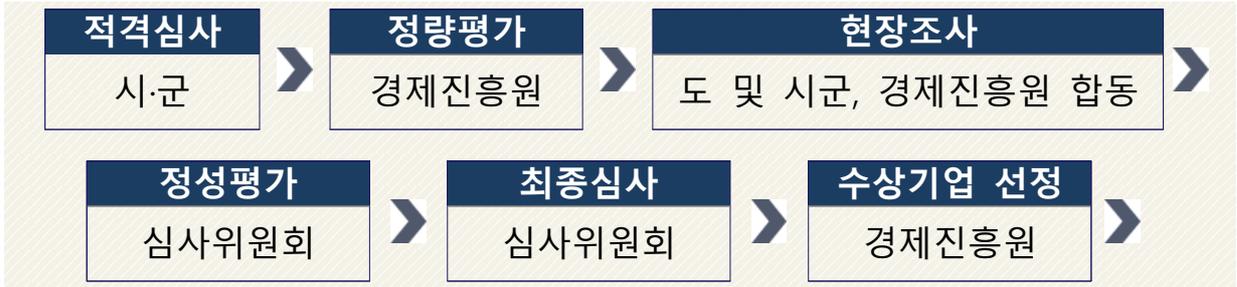
시군	부서명	시군	부서명	시군	부서명
춘천시	기업지원과 250-3083	원주시	기업지원일자리과 737-2976	강릉시	경제진흥과 640-5541
동해시	경제과 539-8689	태백시	경제과 550-2985	속초시	지역경제과 639-2328
삼척시	경제과 570-3354	홍천군	경제진흥과 430-2841	횡성군	경제정책과 340-2060
영월군	일자리청년과 370-2723	평창군	경제과 330-2744	정선군	경제과 560-2150
철원군	경제진흥과 450-5359	화천군	지역경제과 440-2355	양구군	경제체육과 480-7131
인제군	경제협력과 460-4409	고성군	경제체육과 680-3734	양양군	경제에너지과 670-2977

○ 신청서류

구분	신청서류	비고
작성 대상	① 강원특별자치도 일자리대상 신청서	[붙임1-1]
	② 강원특별자치도 일자리대상 평가자료(기업용)	[붙임1-2]
	③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	[붙임1-3]
	④ 기업현황	[붙임1-4]
증빙 자료	① 사업자등록증, 공장등록증명서(제조업만), 대상 업종에 따른 인허가증 사본 ② 기업의 신용평가등급확인서 ③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, 최근 2년간 재무제표 ④ 고용보험 가입자목록 2부('23.12월 말 기준 1부, '24.12월 말 기준 1부) ⑤ 정규직 근로계약서 사본('24.1.1.부터 '24.12월 말까지 채용직원) ⑥ 평가항목 「IV. 가감점」 객관적 증빙서류 ⑦ 산업재해율 확인서 1부('24년도) *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발급 ⑧ 평가항목 「V. 일자리 우수(모범)사례」 객관적 증빙서류	

3. 심사 및 평가

○ 심사방식



※ 접수상황, 현장조사 일정 등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

○ 평가항목 및 배점

분 야		배점	세부평가항목
계		200점	5개 분야 17개 세부항목
정량 평가	일자리 창출	65점	· 근로자 증가수(20), 근로자 증가율(15), 청년 채용 증가수(15), 청년 채용 증가율(15)
	고용 안정	50점	· 고용 유지율(20), 최근 1년 채용 근로자 중 정규직 수(15), 최근 1년 채용 근로자 중 정규직 비율(15)
	기업 경영	10점	· 기업경영 건전성(10) * 신용평가등급
	가점 (감점)	15점 (-3점)	· 일자리사업 협력(5), 사회공헌(2), 도정기여(2), 취약계층 배려(3) · 도내 소재기업으로 5년 이상 정상가동 기업(3) ※ 산업재해율 평균 초과(-3)
정성 평가	기업의 발전 가능성 등	60점	· 기업의 장기발전전략(20), 일자리 우수(모범)사례(20), 일자리 창출 및 직원 복지 증진을 위한 향후계획(20점)

※ 총 점수가 동일할 경우 '일자리창출+고용안정' 고득점 기업 우선 선정하되, 이 점수도 같을 경우

①근로자 증가수 ②근로자 증가율 ③청년채용 증가율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

※ '일자리 우수(모범)사례' 점수가 월등한 기업은 특별상 선정 가능(심사위원회 심의·결정)

4. 선정 및 지원사항

- 선정규모 : 총 9개 기업(대상 1, 우수 7, 특별 1)
- 선정일시 : 2025. 4월 말(예정)
- 결과통보 : 공고, 수상기업 개별통보, 도 및 시군 홈페이지 게재
- 지원사항

구분	지원내용	비고
- 일자리대상 트로피 수여 - 수상기업 방송 홍보	- 트로피 각 1개 - 언론매체 활용	경제진흥원 /G1
- 고용환경개선 사업 참여 우대	- 고용환경개선지원금 지원	도
-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사업 우대	- 경영안정자금 용자 - 특수목적자금 용자	
- 해외시장 개척사업 우대	- 국내·외 수출상담회 및 국제박람회·전시회 참가 등	
-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	- 세무조사 3년 유예	

5. 시상식 개최

- 시상일시 : 2025. 5월 말(예정), G1 TV 특집방송
※ 일정에 따라 시상시기는 변경 될 수 있음
- 시상방법 : 수상기업에 별도 통보

6. 수상 취소

- 허위자료 또는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과실을 고의 또는 과실로 은폐하였을 경우 수상을 취소 또는 환수할 수 있다.
 - 3개월 이상 휴업, 폐업, 부도기업, 타 시도로 주 사업장 등을 이전한 기업
 - 인위적 감원 등으로 고용증대 인원을 유지하지 못하는 기업
 - 기타 강원특별자치도 일자리대상 신청(선정)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
- 조치사항
 - 해당기업에 대한 일자리대상 인증서 회수, 지원금 및 우대지원 중단
 - 향후 3년 이내 일자리대상, 일자리 창출 관련 지원 등 제외

7. 기타 유의사항

- 허위기재, 기재착오, 구비서류 미제출 등에 의한 불이익은 신청기업 책임
 - *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확인된 경우 심사탈락, 수상취소 및 지원금 반환 조치
- 신청기업은 자격요건 적합 여부, 근로기준법 등 법령위반 문제로 행정적, 형사적 처분이 있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에 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하며,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
 - * 제출서류는 일자리대상 시상 종료 후 즉시 파기됨
- 자가 및 임차 기반시설이 없는 기업의 경우 선정 제한 가능
- 신청기업 중 시상 기준에 적합한 기업이 없거나 선발 규모보다 선정기업 수가 적을 경우 시상이 축소되거나 취소될 수 있음
-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(☎033-256-9602) 또는 강원특별자치도 일자리청년과(☎033-249-3241), 신청서 접수 시군의 일자리 담당 부서로 문의